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광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노진영

전화 062-231-4330 / 팩스 0502-193-7661

## 보도자료

2022. 9. 13.(화)

### 제 목

## 前 △△군수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- 금일(9. 13.) 광주지검 반부패·강력수사부(부장검사 최순호)는 A○○ 前 △△군수가 재직 당시 본인 소유 산지를 자신의 동서(同壻)를 거친 전매 형태를 가장하여 토석채취업자에게 매도한 후, 위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와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합계 6억 6,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및 위와 같은 뇌물수수를 마치 주식매매대금 수수 등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뇌물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어, A○○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,
- 위와 같은 A○○ 군수의 범행에 가담한 동서 B○○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,
-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토석채취업자 C○○를 지난 5월 본건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등으로 구속 기소한 후, 금일 뇌물공여,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으로 추가 기소(불구속)하였음

# I

## 피고인

- A○○ [70세, 前 △△군수('14. 7. ~ '22. 6.), 구속 기소]
- B○○ [58세, 건설업체 대표, A○○ 군수의 동서, 불구속 기소]
- C○○ [69세, 토석채취업체 □□산업 대표, 불구속 기소]

※ C○○은 '22. 5.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의 점 등으로 구속 기소

# II

##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, B○○
  - 공모하여, '14. 7.경 A○○이 △△군수에 취임한 직후 본인 소유인 △△군 관내 산지 4필지를 B○○의 명의를 거친 전매를 가장하여 C○○에게 매도한 다음, 부적정하게 위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거나 채취량 변경허가를 내주고, '14. 7. ~ '18. 3. 위 토석채취허가 및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C○○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6,200만 원의 뇌물수수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
  - ※ 본건 토석채취허가는 그 과정에서 **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부적정 등 절차 및 내용상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**
  - 공모하여, 위와 같은 뇌물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, A○○이 실질 소유한 실제 가치 0원인 주식의 매매 등을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 [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
- C○○
  - '14. 7. ~ '18. 3. 위와 같이 A○○에게 합계 6억 6,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 [뇌물공여]

- ① 위와 같이 뇌물공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식매매대금 수수료로 가장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, ② 회사자금 23억 250만 원을 횡령하면서 건설 기계 임차료 지급으로 가장 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
- □□산업의 대표로서 '14. 4. ~ '18. 3. 뇌물공여 자금 등으로 법인자금 합계 1,643,135,957원을 업무상 횡령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
- ※ (C○○에 대한 '22. 5. 구속기소 범죄사실) '16. 2. ~ '21. 12.경 허위 중장비 임차료 등 명목으로 □□산업 자금 23억 4,250만 원을 업무상 횡령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등]
- ※ C○○가 횡령한 금원(총 40억 원 상당) 중 상당 부분(27억 원 상당)은 본건 뇌물 공여를 통해 받아 낸 토석채취허가 이후 사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임

### III

## 수사 경과

- '21. 11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감사원 수사요청
- '21. 12. ~ '22. 4.        □□산업 압수수색 등
- '22. 5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C○○ 구속기소[일부 횡령의 점 先기소]
- '22. 6. ~ 8.              △△군청, A○○ 주거지 압수수색 등
- '22. 8. 12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C○○ 구속기소 부분 1심 유죄 선고(징역 2년 6월, 집행유예 3년), 검찰 양형부당 항소
- '22. 8. 25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A○○ 구속
- '22. 9. 13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A○○ 구속 기소, B○○, C○○ 각 불구속 기소

## IV

##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하여 직무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, 해당 업자는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전형적인 민관유착 비리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냄
- 아울러,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A○○의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 보전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실질적 정의를 실현함
- 향후에도 검찰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여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고, 이를 통해 지역행정의 적법·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☐